순창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1.10.06] (전부개정) 2021.10.06 조례 제2674호

> 관리책임부서명 : 노인복지 관리책임전화번호 : 650-1204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3세대(世代)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효"란 자녀가 부모 등에 대한 공경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부양하고 섬기는 행위를 말한다.
- 2. "3세대 가정"이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(이하"효도대상자"라 한다)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을 말한다.
- 3. "효도수당"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.

제3조(효행교육의 장려) 군수는 유치원,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,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.

제4조(효행 우수자 표창) 군수는 부모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.

제5조(효도수당 지급) 군수는 3세대 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50,000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6조(지급대상 및 지급시기) ① 효도수당 지급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3세대가 3년 이상 순창군에 계속하여 동일 거주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으로 한다. 다만, 출생 및 입양으로 인하여 3세대 가정이 된 경우 출생아 및 입양아에 대해서는 3년 이상 거주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② 효도수당은 효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. 다만, 제 8조제1항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7조(지급신청 및 방법) ①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읍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② 읍·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등록 및 실거주 여부 등 효행 실천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.

제8조(지급중지 및 환수조치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.

- 1. 직계존속,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, 그 밖의 3세대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
- 2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
- 3. 효행자가 가족 부양 단절, 방임 등으로 사회적 지탄 또는 물의를 야기한 때
- ②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니거나 효력을 상실한 사람에게 효도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수당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09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8.12.17. 조례2456>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한시조례)이 조례는 2019년 1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.
- ③ 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 <2021.10.06. 조례2674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